

의안  
번호

228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228호
제 출 자	김경이의원 외 11 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한상규

## 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책임성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여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고자 제정함 .

## 2. 주요내용

- 업무추진비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기본원칙, 집행기준, 사용제한(안 제3조~제5조)
- 사용내역 공개, 정보공개 범위(안 제6조~제7조)
- 교육 및 점검 등,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8조~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1)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2)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관한 훈령」 3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4),
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입법예고 : 2023. 11. 8. ~ 2023. 11. 13.

#### 4. 검토 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,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음. 이 때문에,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-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기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관련규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※ 관계법령

##### 1)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업무추진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

업무추진비: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, 의회사무기구의 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,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

나.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: 지방의회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
2. "회계관계공무원"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 제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

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4. 21., 2015. 4. 1.>

-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## 2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

제64조(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 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고금 관리법」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.>

## 3)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### 1. 업무추진비 공개기준

-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.
  -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, 부기관장, 실·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(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)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
  -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\*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
  - \*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
  -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,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
- 항목은 사용자, 일시, 장소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제로페이, 현금 등), 비목으로 구분한다.
-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.
  -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(규칙)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.
-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.

## 4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5조

제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의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